



A Practical Guide to the New and Revised Indonesian Financial Standards for 2020



pwc.com/id

Contents

도입	3
신규 ‘Big 3’ 기준서	5
PSAK 7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5
부(-)의 보상(negative compensation)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PSAK 71 개정사항	8
PSAK 7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10
PSAK 73, 리스	12
IFRS 업데이트에 따라 개정된 기준서	14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및 PSAK 2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중요성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의 개정	14
PSAK 1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개정	15
PSAK 62,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개정 – PSAK 71 의 PSAK 62에 대한 적용	15
PSAK 71, PSAK 55, PSAK 60 개정사항 – 이자율 지표 개혁 (1 단계)	18
PSAK 73 개정사항 –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
개념체계의 개정	21
DSAK-IAI 에 의해 발표된 신규 기준서	24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정 – 재무제표의 명칭	24
별첨 – 다가오는 요구사항	26

도입

동 발간물은 2020년부터 효력을 가지는 인도네시아회계기준("IFAS"; Indonesian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의 신규 제개정사항에 대한 실무가이드입니다. 동 발간물에서는 해당 제개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공시요구사항 변경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PwC는 고객들이 현재 어떠한 사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향후의 보고기간에 어떠한 변화들이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을 돋고자 합니다.

2020년은 중요한 3가지 신규 회계기준서(PSAK 7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PSAK 7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PSAK 73, '리스(Leases)')가 도입(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해로서 IFAS 하에서 보고를 수행하는 회사는 반드시 동 기준서 도입의 효과를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회계기준위원회 ("DSAK-IAI")는 여러 기존 기준서를 개정 및 연차개선을 통하여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DSAK-IAI는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PSAK 25,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중요성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 PSAK 1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의 PSAK71에 따른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 PSAK 62,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에서 보험계약의 발행자가 PSAK71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사항 등을 공표하였습니다.

상기의 개정사항은 전체 IFRS 컨버전 프로젝트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도 기준의 IFAS는 2019년도 기준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상당부분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DSAK-IAI는 수정된 개념체계를 발행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이자율 지표 개혁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1단계 적용내용을 2020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코로나 19("COVID-19")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DSAK-IAI는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에 대한 PSAK73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이용자에게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 개정사항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IFRS개선에 따른 신규기준 및 개정사항 이외에도 DSAK-IAI은 PSAK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를 개정하였으며 국가회계기준(national GAAP)에 대한 신규 해석서인 ISAK 35, '비영리기업의 재무제표 공시(Presentation of not-for-profit oriented entity financial statements)'를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IASB는 2017년 5월에 보험발행자의 현행 실무 일부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해 소급 적용되는 IFRS 17,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을 공표하였습니다. 후속적으로 IASB는 2020년 6월에 IFRS17의 최종 개정사항을 공표하였고 적용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하였습니다. DSAK-IAI는 현재 IFRS17을 인도네시아에 PSAK74로 도입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PwC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동 실무가이드는 다가오는 당기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구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Appendix A 참조).

신규 'Big 3' 기준서

PSAK 7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2017년 7월, DSAK-IAI는 기존 PSAK55을 대체하는 PSAK 71,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의 최종 완성 버전을 발행하였습니다. 동 최종 버전은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기존의 발생손실모형을 대체하는 기대신용손실 모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2013년 11월에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에 의해 발표된 위험회피 관련 부분의 최종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항

분류 및 측정

PSAK71은 채무상품을 3가지로 분류합니다: 상각후원가(amortised cost),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FVOCI":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당기손익-공정가치 ("FVPL":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PSAK71하에서의 채무상품에 대한 분류는 금융상품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사업모형과 함께,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원리금 지급" 또는 "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의 사업모형은 기업이 현금흐름 및 기업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현금흐름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또는 금융자산의 매매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또는 둘 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기업의 사업모형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상품을 만기까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고 '원리금 지급(SPPI)'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상품은 상각후원가로 분류될 것입니다. 원리금 지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과 자산을 매매하는 것 모두가 채무상품의 보유 목적이라면 해당 금융자산은 FVOCI로 분류될 것입니다. 상각후원가나 FVOCI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나머지 경우는 FVPL로 분류되는 것이 신규기준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모형에 대한 평가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금융자산 간 측정 및 인식의 불일치("회계불일치(accounting mismatch)")를 유의적으로 줄이거나 제거시키기 위하여 금융자산을 FVPL로 분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PSAK71은 손상을 인식하기 위한 새로운 모형인 기대신용손실("ECL")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PSAK55의 요구사항으로부터의 변화와 금융위기 하에서 제기된 발생손실모형에 대한 비판 등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신규모형은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신용이 아직 손상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12개월간(매출채권 등의 경우는 전체기간)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즉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PSAK 71은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이후 신용도의 변화에 기초한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신용도의 변화에 따라 해당 3단계를 통해 움직이게 되며, 각 단계는 기업이 어떻게 손상을 측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는지를 정의합니다. 신용도 위험에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다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 아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사용하여 손상이 측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모형은 리스채권 및 매출채권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시

기초 부터 기말까지의 기대신용손실 충당금의 변동, 가정 및 투입변수, PSAK55하에서의 기존 분류 범주와 PSAK71하에서의 새로운 분류 범주 간의 비교 등 광범위한 공시사항이 요구됩니다.

위험회피(Hedge) 회계처리

위험회피 효과성 검토와 위험회피회계처리의 적격성

PSAK71은 위험회피 효과성(결과적으로 위험회피회계처리의 적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PSAK 55하에서 위험회피는 과거기간 및 후속기간에 대하여 반드시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가져야 했습니다(즉, 과거기간 및 후속기간에 대하여 80%-125% 범위 조건의 충족 필요). PSAK 71은 위험회피 대상항목 및 위험회피 수단 간의 경제적 관계 조건으로 해당 요구조건을 대체하고 있으며, '위험회피 비율'이 기업이 실제로 사용하는 위험관리 목적과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도 요구합니다.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보고될 것입니다. 기업이 동시에 문서화를 수행해야 하는 점은 여전히 요구될 것이나, PSAK 71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 문서화 사항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

신규 기준서에서는, 우선 위험회피대상항목 적용요건에 대한 고려로 인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위험회피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던 기존의 일부 제한사항들을 삭제하는 등, 위험회피대상항목 적용요건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독립적으로 인식되고, 신뢰성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비금융항목의 위험 구성요소도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통합 익스포저(파생상품이 결합된 익스포저)도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 PSAK71에서는 비록 매크로 위험회피(이는 향후 별도 기준서 및 논의에서 다루어 질 예정입니다)가 커버되지 못하더라도 항목 집합에 대한 위험회피가 보다 유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계담당자들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위험 익스포저를 집합화(Grouping)하고, 순포지션(예를 들면, 예상 외화 매입 및 매출 순액)만을 위험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PSAK55 하에서는 이러한 순포지션이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될 수 없었지만 PSAK71에서는 기업의 위험관리전략과 일관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포괄손익(OCI)을 통해 공정가치가 측정되는 지분상품을 통한 투자가 비록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PSAK71은 이러한 항목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처리 역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 수단

PSAK71은 위험회피 수단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하기와 같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 PSAK 55 하에서는 옵션의 매입 시 유의적인 변동성을 창출할 수 있는 시간가치의 공정가치가 당기손익을 통해 인식됩니다. PSAK71은 옵션의 매입을 보험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관점 하에서 최초의 시간가치(일반적으로 화폐 옵션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지불되는 프리미엄)는 위험회피 기간(만약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시간과 관계가 있다면(예:6개월간의 재고자산 공정가치 위험회피))에 걸쳐 또는 위험회피 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만약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거래와 관계가 있다면(예. 예상 매입거래에 대한 위험회피))에 반드시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시간가치와 연동된 옵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을 통해 인식될 것입니다.
- 옵션의 회계처리는 선도 계약의 선도 요소 및 금융자산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 PSAK55 하에서, 비파생금융상품은 외환위험의 위험회피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비파생금융상품의 위험회피 수단으로서의 적격성은 공정가치가 당기손익으로 측정되는 비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계처리, 표시 및 공시

PSAK55 하에서의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처리 및 표시·공시 규정은 PSAK71 하에서도 대부분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들은 비금융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최초로 인식될 때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인해 자본에 누적된 손익을 장부금액으로 재분류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PSAK55하에서도 허용되었으나 기업들은 누적 손익을 자본으로 관리하는 것도 회계정책으로 선택 가능하였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기준서 하에서는 추가적인 공시사항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위험회피 회계처리와 관련되진 않지만 DSAK-IAI는 금융부채가 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지정된 경우에 기업의 자기신용위험의 변동과 관련되는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PSAK71을 개정하였습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PSAK71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PSAK71은 소급적용되어야 하지만 비교기간의 재작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의 보상(negative compensation)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 PSAK 71 개정사항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동 개정사항은 두 가지 이슈를 다룹니다:

- 어떤 금융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는지: 개정 내용은 특정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존 PSAK71에 비하여 더 많은 자산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업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회사들에게 환영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융부채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 : 개정 내용은 대부분의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손익이 즉시 인식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PSAK55하에서의 실무적 관습과는 달라진 사항으로 재협상된 차입금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DSAK-IAI는 회사들이 일부 부(-)의 보상이 있는 중도상환이 가능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게 하는 좁은 범위의 PSAK71 수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은 일부 대여금 및 채무증권 등의 자산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의 보상은 채무자가 해당 상품을 계약상의 만기 이전에 잔여 원리금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각후원가 측정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해당 부(-)의 보상(잔여 원리금과 중도상환 금액의 차이)은 반드시 '계약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보상의 예로는 미지급된 원리금에 관련된 기준금리 변동효과가 반영된 금액을 계산하는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서는 이러한 '합리적인 보상'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조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과 더불어, 자산은 반드시 '수취 목적 보유' 사업모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향

개정 사항은 대체적으로 환영받는 분위기입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종류의 채무 상품에서 부(-)의 보상을 수반하는 중도상환특성을 광범위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중도상환조건은 트리거(trigger) 사건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입금 담보의 매각 또는 가치 하락).
- 중도상환조건은 계약 상 일방 또는 쌍방 모두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조건은 허용될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보상에 대한 계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계약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변경 – PSAK71 회계처리 변경 확정

예상된 바와 같이 개정 사항은 PSAK71하에서의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시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 역시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변경이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는 관련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익은 기존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정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동 개정 사항은 모든 기업, 특히 PSAK 55하에서 해당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던 기업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

개정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PSAK 7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2017년 7월, DSAK-IAI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익 인식 관련 기준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정 산업에는 유의적인 잠재적 변화가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에 일부 개정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향

하기 요약사항은 신규기준서로의 변경에 있어 유의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제 이전

수익은 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통제를 가질 때 인식됩니다. 고객은 재화나 용역으로부터의 효익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통제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통제의 이전은 위험과 보상의 이전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은 수익이 한 시점에 인식되는지 기간에 걸쳐 인식되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변동대가

기업은 미래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그 대가가 변동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환불, 성과보너스 및 위약금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금액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금액에 대한 추정이 변경될 때 유의적인 부분의 수익이 환원되지 않는다면 동 변동대가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에 포함됩니다. 설사 변동대가의 전체 금액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경영진은 최소한 일부 금액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될 때 인식되게 됩니다. 동 내용은 변동대가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인식하지 않던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영향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매 보고기간 말에 추정치를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수익 인식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라이선스의 대가로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로 열티 형태로 약속된 대가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관련된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거래가격의 배분

단일 계약 하에서 복수의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은 그 대가를 관련된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여야 합니다. 동 배분은 기업이 각 개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금액에 기초할 것입니다

라이선스

고객에게 그들의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은 해당 라이선스의 이전이 기간에 걸쳐 제공되는지 한 시점에 제공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기간에 걸쳐 고객이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합니다. 한 시점에 이전되는 라이선스는 고객이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시점에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합니다. 라이선스가 부여될 때, 고객이 해당 지적재산 라이선스의 사용을 직접 지시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잔여효익을 모두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준서는 동 평가에 대하여 기업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일부 계약은 고객이나 기업에게 유의적인 금융효익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의 성과와 고객의 대가지급이 유의적으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은 계약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한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거래가격에서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지급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이러한 화폐의 시간가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동 기준의 적용에 대한 일부 예외와 실무적 간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

기업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원가(판매수수료나 이동활동 등)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원가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수익이 인식됨에 따라 상각되어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 보다 많은 계약원가가 자산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기준서의 도입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하여 발생한 계약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할 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시

이미 인식된 수익 뿐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계약에 따라 미래에 인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시야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공시사항이 요구됩니다.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양적/질적정보와 경영진이 수익인식에 대하여 내린 결정에 따른 이러한 판단의 변경사항 역시 제공될 것입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PSAK72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기업은 각 과거 보고기간의 공시에 대하여 수익인식 기준서를 소급적용 할 수도 있고(완전소급법), 최초 적용시점에 적용효과를 자본에 누적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수정소급법). 완전소급법을 선택하는 기업은 특정 실무적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PSAK 73, 리스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2017년 7월, DSAK-IAI는 기존의 기준서인 PSAK 30을 대체하는 PSAK 73, 리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특히 리스이용자로 회계처리에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요사항

PSAK 30 하에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재무상태표에 기재)와 운용리스(재무상태표에 미기재)에 대하여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였어야 합니다. PSAK 73은 이제 리스이용자가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미래 리스료를 반영하는 리스부채 및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준서는 특정 소액리스 및 단기리스에 대한 선택적 예외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는 오직 리스이용자에게만 적용 됩니다.

리스제공자의 경우 대부분의 회계처리가 기존과 거의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DSAK-IAI가 리스의 정의(및 계약의 병합과 분리)에 대하여 PSAK30 을 업데이트함에 따라 리스제공자 역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소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신규 회계기준서의 모형은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 사이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향

PSAK 73은 많은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상태표

신규 기준서는 재무상태표 그 자체 뿐 아니라 관련된 여러가지 비율, 예를 들면 부채비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특정 산업에 따라 또는 PSAK 30하에서 운용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계약의 건수에 따라 신규기준서의 적용은 부채비율의 유의적인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및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PSAK 30하에서의 운용리스와 비교하면 이는비용 분류 뿐 아니라 전체 리스기간 및 각 기간의 총 비용금액 수준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사용권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정액법 상각과 리스부채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 인식은 초기 리스기간에 있어 손익계산서에 보다 높은 금액의 비용을 인식하게 할 것이며 리스기간 후반에 이러한 비용은 감소할 것입니다.

현금흐름표

신규 기준서는 과거 운용리스로 분류된 계약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이 더 이상 영업활동으로 모든 금액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는 리스료의 지급 부분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표시될 것입니다(기업의 회계정책이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 표시하는 경우). 리스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액 부분은 재무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 소액리스, 변동리스로 등은 영업활동으로 표시됩니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

PSAK73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경과기간에 기업은 완전소급법 대신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측정에 있어 특정 완화요건이 있는 '간편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간편법'은 비교기간에 대한 재공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 간편법의 일환으로 기업은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계약은 예외가 인정됩니다(Grandfathering)).

IFRS 업데이트에 따라 개정된 기준서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및 PSAK 2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중요성의 정의와 관련된 사항의 개정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및 PSAK 25, '회계정책,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에 대한 개정 및 후속적인 기타 PSAK의 개정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PSAK 및 재무보고 개념체계 전체에 걸쳐 일관된 중요성의 정의 사용
-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설명의 명확화; 그리고
-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PSAK 1의 일부 기준 확립.

개정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하다.'

개정사항은 그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과 비슷한 영향을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줄 방식으로 정보가 소통된다면 그 정보는 불분명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업은 전체적인 재무제표의 맥락에서 기업이 중요성을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개정사항은 재무제표가 대상으로 하는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이용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주요이용자'는 그들이 필요한 재무정보의 많은 부분을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의존해야하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다수'로 정의됩니다.

영향

개정사항은 PSAK 기준서 간의 중요성의 정의를 보다 일관되게 하고 있으나 재무제표의 준비에 있어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PSAK 1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Investmen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대한 개정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투자자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예: 우선주 또는 장기대여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DSAK-IAI은 이러한 장기투자지분이 PSAK 71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한 PSAK 71에 따른 손상요구사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아 왔습니다.

통찰

DSAK-IAI는 PSAK 15에 대한 일부 범위의 개정을 발표하였고, 지분법이 적용되지 않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은 PSAK 71에 의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PSAK 71에 대한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실무사례 또한 개정사항에서 제공되었습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PSAK 62, '보험계약(Insurance Contracts)' 개정 – PSAK 71의 PSAK 62에 대한 적용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동 개정사항은 PSAK 71, '금융상품'과 다가오는 신규 보험계약 기준서 간의 시행일 차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우려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PSAK 62의 개정사항은 보험회사들에게 두 가지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해결책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에 대한 PSAK 71의 한시적 면제(보고실체 단위에 적용)와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입니다. 두 접근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PSAK 62(발표된 개정사항 포함)은 다가오는 신규 보험계약 기준서에 의해 대체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 면제 및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모두 신규 보험계약 기준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만 적용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항

PSAK 71 적용의 한시적 면제

PSAK 62 의 개정사항은 신규 보험 기준서가 도입되기 전까지 보험자가 신규 PSAK 71 을 도입하는 대신, PSAK 55,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면제는 오직 보고실체 단위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보험자의 활동은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험자는 PSAK 62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생기는 부채의 장부금액이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에 비해 유의적인지를 평가합니다.

두번째로 보험자는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을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과 비교합니다. PSAK 62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에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부채와 더불어 하기 역시 보험과 관련된 부채로 고려됩니다:

- PSAK 55 적용 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되는 비파생 투자계약 부채;
- 상기에서 언급한 계약(이러한 보험 및 비파생 투자계약 부채)을 보험자가 발행하거나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부채.

두 번째 조건은 해당 결과(보험과 관련된 부채의 총장부금액을 모든 부채의 총장부금액으로 나눈 비율)가 1) 90%를 초과하거나, 2) 90% 이하지만 80%를 초과하면서 보험자가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는 2019년 6월 30일 직전의 연차보고기간의 장부금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특정 상황 하에서는 재평가가 필요하거나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

PSAK 62 에서는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가 종종 원가로 측정되지만, PSAK 71 에서는 이러한 특정 금융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당기손익의 변동성을 발생시킵니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사용함으로써 적용가능한 지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자가 PSAK 71 을 적용할 경우 지정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하는 금액과 보험자가 기업회계기준서 PSAK 55 를 적용했더라면 지정된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보고했을 금액간의 차이를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PSAK 71 하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만 PSAK 55 하에서는 해당 항목 전체가 그렇게 측정되지 않는 경우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을 사용하도록 지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PSAK 62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무관한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금융자산이 적용의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면, 금융자산을 이전하여 은행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다거나 더 이상 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는 금융자산의 지정이 철회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자산과 관련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잔액은 재분류조정으로 하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정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사이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 누적액의 기초잔액 조정사항으로 인식됩니다.

동일한 논리에 따라 기업이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 누적액에 대한 이익잉여금 기초잔액이 조정됩니다.

영향

이러한 두 가지 '한시적 면제' 및 '당기손익조정접근법'은 기업이 다가오는 신규 보험계약 기준서의 발표 이전에 PSAK 71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당기손익의 일시적 변동성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시적 면제의 적용은 기업이 짧은 기간 내에 두 가지 주요한 신규 회계기준서를 적용할 필요가 없게 하고, PSAK 71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할 때 신규 보험계약 기준서의 회계처리 효과를 고려할 수 있게 합니다.

보험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는 연결실체는 이러한 한시적 면제가 오직 보고실체 수준에서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보험업 종속기업이 PSAK 55를 개별재무제표에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도 전체 연결실체가 한시적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종속기업은 PSAK 71에 따른 정보를 연결 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떠한 접근법을 선택하든 유의적인 추가 공시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PSAK 71, PSAK 55, PSAK 60 개정사항 – 이자율 지표 개혁

(1 단계)

경과규정: 소급적용

DSAK-IAI는 이자율지표 개혁과 관련한 일부 완화를 제공하는 PSAK 71, '금융자산', PSAK 55,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PSAK 60, '금융상품: 표시'에 대한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완화는 위험회피 회계처리와 관련되어 있으며, IBOR의 개혁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회계처리의 종료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비효과적인 위험회피 부분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IBOR을 기초로 하는 계약을 포함하는 위험회피 회계처리가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이러한 완화는 모든 업종의 회사들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슈

금융위기 이후 LIBOR나 타 IBOR(inter-bank offered rates) 등의 이자율 지표 대체는 국제 감독기구들에 있어 우선순위였습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대체를 위한 로드맵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IBOR를 기초로 한 계약이 금융기관 및 회사 양 쪽에 있어 보다 만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IFRS 하에서 리포팅을 수행하는 기업들에게 동 변화는 유의적인 잠재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기준서의 제정위원들은 IBOR 개혁 효과로 어떠한 완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2 단계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단계로 개혁 이전의 기간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대한 완화가 동 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단계는 기존 이자율이 대체 이자율 들에 의하여 대체될 때 발생하는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영향

하기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겠지만 1 단계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특정 위험회피 회계처리 요구사항의 한시적 예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완화는 IBOR 개혁이 일반적으로 위험회피 회계처리의 종료를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효과적인 위험회피 부분은 PSAK 55 및 PSAK 71 양 기준서 하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당기순익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사항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러한 예외사항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일몰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우 큰 발생가능성' 요구조건

PSAK 55 및 PSAK 71 양 기준서 하에서 모두 현금흐름 위험회피 회계처리에 대하여 미래 현금흐름의 '매우 큰 발생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이 IBOR에 의존한다면 (예를 들어, 이자율 파생상품에 의해 위험회피되는 발행 예정

LIBOR 부채의미래 이자지급액), IBOR 가 발표되기 이전 기간에 이러한 현금흐름이 '매우 큰 발생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완화조건은 기업이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이자율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IBOR 개혁에 따라 변동된다고 하여도(예를 들어, 위험회피된 예상 부채 발행에 대한 미래 이자지급이 GBP LIBOR + Y%가 아닌 SONIA + X%가 되어도), 이는 '매우 큰 발생가능성' 조건의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진적 평가 (경제적 관계와 '매우 효과적인' 위험회피)

PSAK 55 와 PSAK 71 모두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미래전망 정보를 사용한 전진적 평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SAK 55 는 위험회피가 높은 위험회피 효과를 예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IFRS 9 에서는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간의 경제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IBOR 과 IBOR 의 대체 이자율에 따른 현금흐름은 비효과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율 개혁일이 다가오면서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적으로 이자율의 대체가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간에 시차를 두고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이는 위험회피의 비효과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사항 하에서, 기업은 위험회피대상, 위험회피수단, 회피대상위험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는 IBOR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PSAK 55 소급적 효과성 테스트 예외

전진적 평가의 맥락에서 상기에서 언급된 불확실성은 PSAK 55 의 소급적 효과성에 대한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IBOR 개혁은 위험회피가 80-125%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PSAK 55 는 오직 소급적 효과성 테스트에 따른 결과가 80-125%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IBOR 와 관련된 유일한 불확실성이라면, 동 기간 동안 위험회피가 중단되지 않도록하는 소급적 효과성 테스트에 대한 예외사항을 동 개정사항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진적 평가와 같은 기타 위험회피 회계처리 조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험 구성요소

일부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 대상항목 및 회피대상위험은 비 계약적으로 특정된 IBOR 위험 구성요소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로는 지정된 회피대상위험이 IBOR 변동에 따른 채무의 공정가치변동 위험인 고정이자율 채무의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들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처리를 적용하기 위하여 PSAK 71과 PSAK 55 모두 지정된

위험 구성요소가 별도로 식별되고 합리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위험 구성요소가 오직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되며, 지속적으로 식별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이 위험회피관계를 자주 재설정하는 맥크로 위험회피의 관점에서 동 완화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이 최초로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공시

개정 기준서는 동 사항이 적용되는 위험회피 수단의 명목금액과 완화를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유의적인 가정과 판단 및 기업이 IBOR 개혁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경과기한 동안 어떻게 이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적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PSAK 73 개정사항 – COVID-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에 따른 결과로 리스이용자들에게 임차료 할인 등이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은 임차료 면제 기간, 리스료 유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2020년 5월 30일, DSAK-IAI는 리스제공자가 COVID-19와 관련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선택적인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하는 PSAK 73 개정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리스이용자는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을 리스 변경이 없었던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을 발생시키는 사건이나 조건이 속하는 기간의 임차료 할인 등을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요 조항

COVID-19에 따른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은 때때로 미래 기간의 임차료를 증가시키기도 하는 임차료 면제 기간, 리스료 유예 등 다양한 형태로 주어졌거나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PSAK 73은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DSAK-IAI는 COVID-19와 관련된 잠재적인 다양한 형태의 임차료 할인 등에 동 요구사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특히

팬더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가 직면할 다양한 다른 어려움을 고려시 매우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서는 리스이용자(리스제공자는 제외)들에게 COVID-19 와 관련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선택적인 면제 형태의 완화된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리스제공자는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회계정책의 수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는 임차료 할인 등을 변동리스료로 회계처리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무적 간편법은 이러한 임차료 할인 등이 COVID-19 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하기의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 a.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 b. 리스료 감면이 2021 년 6 월 30 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 c.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제 사항을 적용하는 리스제공자는 이러한 사실과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COVID-19로 인한 임차료 할인 등의 금액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한 리스이용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모든 계약에 동기준서를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개정 사항은 PSAK 25하에서도 소급적으로 적용되지만, 리스이용자들이 PSAK 25의 문단 28(f)에 따라 과거 기간의 재무정보를 재작성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영향

만연한 팬더믹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고려할 때 많은 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 등을 여러 형태로 적용받았으며, 동 개정사항의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20 년 6 월 1 일 이후 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 사항의 최대한 빠른 적용을 허용하기 위하여 2020 년 5 월 30 일 현재 발행이 승인되지 아니한 중간재무제표 및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개념체계의 개정

이슈

DSA-K-IAI는 개념체계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PSAK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추후 기준서 제개정 시 이러한 수정된 개념체계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이용자들이 이러한 개념체계가 미래 기준서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영향

IFRS 계층체계

개념체계는 PSAK 기준서에 속하지 않으며 어떠한 기준서보다 우선하지 않으므로, 단기간에 미치는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개정된 개념체계는 미래의 기준서 제개정 절차에 영향을 줄 것이나, 현재의 IFRS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자들은 IFRS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이슈에 대한 회계정책을 수립할 때 개념체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화

주요 변화는 하기와 같습니다:

- 재무보고목적의 관리의 중요성을 증가시켜 자원 분배 결정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
-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정의를 통한, 중립성의 구성요소로써의 신중성의 재강조.
- 보고기업의 정의: 법적실체이거나 법적실체의 일부일 수 있음.
- 자산의 정의 수정: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 부채의 정의 수정: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 인식(recognition)을 위한 가능성 기준의 삭제, 제거(derecognition)의 기준 추가.
- 다른 측정기준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대한 기준 추가, 그리고 측정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에 대한 설명
손익계산서가 보고기간의 기업 재무성과에 관한 정보의 주요 원천임을 기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의 재무성과를 이해를 증진시키려면 재무제표에 포함된 그 밖의 정보의 분석뿐만 아니라 인식된 모든 수익과 비용(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수익과 비용 포함)의 분석이 필요함.

기준서는 부채와 자본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상품의 분류에 대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어떠한 변경도 아직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주제에 대한 별도의 프로젝트에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 프로젝트에는 개념체계의 다른 개정사항 결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행일

기준서 제정위원들은 수정된 개념체계를 즉시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고기업들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연차보고기간에 대하여 동 개념체계에
기초한 회계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DSAK-IAI에 의해 발표된 신규 기준서

PSAK 1, '재무제표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정 – 재무제표의 명칭

경과규정: 소급적용

이슈

IAS 1(국제회계기준)과 PSAK1 간 차이 중 하나는, IFRS 하의 재무보고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기준서 상에 특정하게 명시된 재무제표 명칭 이외의 명칭 사용에 대한 유연함일 것입니다. PSAK 1의 동 개정은 IFAS 하에서 재무보고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문단 10에 기술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라는 명칭 대신에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

동 개정은 PSAK 하의 재무보고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PSAK 1 상에 특정하게 명시된 재무제표 명칭 이외의 명칭 사용에 대한 유연함을 부여함으로써 PSAK 1을 IAS 1과 보다 일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SAK 1은 기업이 영리기업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은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이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칭과 재무제표 명칭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을 발표는 PSAK 45,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sation)',의 동시대체 및 비영리 부문에 적용가능한 신규 해석서(ISAK 35)의 소개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시행일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ISAK 35,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not-for-profit oriented entity financial statements)'

이슈

2019년 1월 1일 기준서가 대체되기 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비영리 부문에 속하는 대부분의 보고기업들은 재무제표를 준비함에 있어 PSAK 45,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Accounting for Non-Profit Organisation)'를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중 DSAK-IAI는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새로운 해석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영향

동 해석서는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법적 상태 및 구조 불문)의 일반목적 재무제표의 준비 및 표시에 있어 PSAK 1과 함께 적용됩니다. 근본적으로 ISAK 35는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어떻게 재무제표의 특정 항목의 명칭과 재무제표 명칭을 비영리활동에 보다 적합하게 수정하는지를 포함하여,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이 어떻게 PSAK 1의 문단 5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석서는 기부자가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에 공여한 자산이 기부자가 부과한 조건에 따라 어떻게 사용제한 여부가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ISAK 35는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SAK ETAP)을 적용하던 비영리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행일

ISAK 35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별첨 – 다가오는 요구사항

제목	주요 요구사항	시행일
PSAK 22, '사업결합(Business Combination)' 개정	'사업'으로 고려되기 위해, 취득은 투입물 그리고 그러한 투입물에 적용되어 유의적으로 산출물을 창출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
PSAK 112, '기부금 회계처리(Accounting for Wakaf)'	기준서는 기업이 개인 또는 기업에 기부하는 기부금(Wakaf)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PSAK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개정 – 부채의 유동성 분류	보고기간 말의 권리의 존재 여부에 따른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대한 좁은 범위의 개정이 있습니다. 개정사항은 또한 PSAK 1에서 부채의 '결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 데스크 연락처

Korea Business Desk Contact



Lok Budianto 록 부디안토

Korea Desk Leader, Assurance
lok.budianto@pwc.com
T: +62 21 509 92901



Taehun Jung 정태훈

Advisor
taehun.jung@pwc.com
T: +62 21 509 92901
M: +62 811 989 1403



Inhyuk Park 박인혁

Advisor
inhyuk.park@pwc.com
T: +62 21 509 92901
M: +62 811 851 7209

Authors, contributors, and reviewers

Djohan Pinnarwan

+62 21 521 2901 (ext. 82299)
djohan.pinnarwan@pwc.com

Dariya Karasova

+62 21 521 2901 (ext. 82635)
dariya.m.karasova@pwc.com

Raisa Lestari

+62 21 521 2901 (ext. 83827)
raisa.lestari@pwc.com

Dwi Jayanti

+62 21 521 2901 (ext. 82549)
dwi.jayanti@pwc.com

Tri Pandu

+62 21 521 2901 (ext. 84276)
tri.pandu@pwc.com

Dania Mulandari

+62 21 521 2901 (ext. 83797)
dania.mulandari@pwc.com

For professional accounting advice, please contact:

Djohan Pinnarwan

+62 21 521 2901 (ext. 82299)
djohan.pinnarwan@pwc.com

Jumadi Anggana

+62 21 521 2901 (ext. 81990)
jumadi.anggana@pwc.com

Elina Mihardja

+62 21 521 2901 (ext. 83615)
elina.mihardja@pwc.com

Ivina Hartopo

+62 21 521 2901 (ext. 83209)
ivina.hartopo@pwc.com

Irwan Lau

+62 21 521 2901 (ext. 82016)
irwan.lau@pwc.com

Jasmin Maranan

+62 21 521 2901 (ext. 81619)
jasmin.m.maranan@pwc.com

Ponco Widagdo

+62 21 521 2901 (ext. 83322)
ponco.widagdo@pwc.com

PwC Indonesia

WTC 3
Jl. Jend. Sudirman Kav. 29-31
Jakarta 12920 – Indonesia
T: +62 21 50992901 / 31192901
F: +62 21 52905555 / 52905050

Pakuwon Center
Tunjungan Plaza 5, 22nd Floor, Unit 05
Jl. Embong Malang No. 1, 3, 5
Surabaya 60261 - Indonesia
T: +62 31 99245759